

의안번호	2215052
의 퇴 인	박수민의원
회 답 일	2026.4.6.
추 계 번호	25B6811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(정의)	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나. 둘 이상의 시·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(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철도(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(이하 “광역철도”라 한다). 다만,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광역교통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정하는 표정속도(表定速度: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) 미만인 도시철도 및 철도는 제외함	의무규정
2	제8조 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)	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(제2항) 9. 광역철도별 표정속도의 기준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8조 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인 표정속도¹⁾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표정속도 기준이 개정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경우, 종전 요건상 광역철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선 또는 연장구간 등이 광역철도로 지정될 수 있음. 이 경우 기존 도시철도에 해당하는 노선 등이 광역철도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노선 또는 연장구간에 대한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에 대한 국고 부담이 현행 수준보다 증가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현행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의 국고부담비²⁾³⁾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, 개정안에 따라 표정속도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‘도시철도’ 사업이 ‘광역철도’로 지정될 경우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이 10%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철도 건설 및 개량 사업 재정분담비

	국가	지방자치단체
광역철도	70%(서울 50%)	30%(서울 50%)
도시철도	60%(서울 40%)	40%(서울 60%)

자료: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1)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4조(광역철도)

-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광역교통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.

4. 표정속도(表定速度,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)가 시속 50킬로미터(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) 이상일 것

2)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13조(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부담)

-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, 서울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.

3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] 46. 도시철도 건설, 서울 40, 지방 60

- 그런데 개정안은 구체적인 표정속도 기준을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표정속도의 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 알 수 없고, 기준 완화로 추가로 광역철도로 지정을 신청할 노선의 범위, 사업 규모, 사업 시기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증가하는 국비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